

별첨-5 전형 단계별 제출 서류 안내문

※ 제출 기간 및 서류 목록에 대한 사전 안내이며, 추후 별도 안내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① 제출 시 유의사항

-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은 응시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평가 및 가산점 부여 등을 진행하고 다차원 대상자에 한하여 자격요건 증빙서류, 최종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가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·대조하며, 착오 또는 허위 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
-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발급번호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

② 다차원전형 대상자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안내

- 제출 기간: '26. 11. 9.(월) ~ 11. 11.(수) 18:00

※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차기 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

- 제출 서류 목록

채용 분야	제출 서류
인문사회계	▶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 보유자: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- TOEIC 800점(TOEFL[IBT] 91점, TEPS 310점, G-TELP(LEVEL 2) 76점, FLEX 720점, OPIc IM3, TOEIC SPEAKING IH) 이상 취득자 ▶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: 학위 증명서 ※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취득자는 공인어학성적 자격요건 면제 가능
이공계	▶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 보유자: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- TOEIC 750점(TOEFL[IBT] 85점, TEPS 285점, G-TELP(LEVEL 2) 70점, FLEX 662점, OPIc IM2, TOEIC SPEAKING IM3) 이상 취득자 ▶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: 학위 증명서 ※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취득자는 공인어학성적 자격요건 면제 가능
국제협력	▶ 입사지원서 경력/경험 사항에 기재한 모든 경력(경력증명서, 4대 보험 자격 득실 등) 및 경험(공모전, 수상, 자격증 등) 증빙 ※ 필요시 제출 자료 외 추가 자료 징구 가능 ▶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 보유자: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- TOEIC 870점(TOEFL[IBT] 97점, TEPS 348점, G-TELP(LEVEL 2) 88점, FLEX 800점, OPIc IH, TOEIC SPEAKING 150점) 이상 취득자 ※ TOEIC SPEAKING의 경우,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성적 제출 시 등급 외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수 제출(150점 이상 점수 확인 불가 시 미인정)

채용 분야	제출 서류
	▶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: 학위 증명서 ※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취득자는 공인어학성적 자격요건 면제 가능
장애인*	▶ 장애인증명서 등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(장애인의 기준) 및 제4조(중증장애인의 기준)에 해당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국가유공자*	▶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가점비율 기재)

* (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분야 외) 장애인,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자는 면접전형 시 제출

③ 면접전형 대상자 가점 증빙서류 제출 안내

○ 제출 기간: '26. 11. 24.(화) ~ 11. 26.(목) 18:00

※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차기 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제출 서류 목록

구분	제출 서류
장애인	▶ 장애인증명서 등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(장애인의 기준) 및 제4조(중증장애인의 기준)에 해당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국가유공자	▶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가점비율 기재)
비수도권 지역 인재	▶ 대학(학사)까지의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(대학원 이상 제외) - 대학 재학(휴학)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-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(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) 제출 ※ 비수도권 지역 인재 세부기준 참조
저소득층	▶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또는 한부모가족 확인서 -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급여를 수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북한이탈주민	▶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다문화가족	▶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(부 또는 모)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-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,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 관계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확인서
자립준비청년	▶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

※ 재단 체험형 인턴 우수인턴지정자는 별도 증빙 불필요